

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 지급 규정(3-4-7)

최종개정일 : 2018.12. 6.

제1조(강의의 구분과 정의) 본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 실습,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강의라 한다.
2.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3.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4.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5. 전임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제2조(강의책임시간)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학기당 150시간(연간 300시간)으로 하며, 교원 책임시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6., 2016.3.23.)

제3조(강사료의 지급) 본 대학교의 강의 중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각각 강사료를 지급한다.

1. 초과강사료는 초과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한다.
2. 시간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강의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강사료의 계산) 강사료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강사료를 계산한다. 단, 체육 및 기타 특정기능에 대한 실기지도는 보통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
2. 강사료는 주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 단, 매 학기말 마지막 주 강의에 있어서는 일주 미만을 일주로 계산할 수 있다.
3. 전임교원의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정규과정 시간은 초과강의에 포함하여 강사료를 계산한다. (개정 1996.4.18)

제5조(책임시간의 일부면제) 총장은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그 정도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강의시간의 제한) 강의시간은 다음에 의한 시간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여 담당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	분	초과 강의(주당)	시간강사 강의(주당)
대	학	6 시간	8 시간

제7조(강사료 지급기준액) ①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외국인·명예교수·국내저명인사 및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교육하는 내국인의 시간 강사료는 기준액의 5배 이내
2. 삭 제
3. 강좌당 수강인원이 120명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강사료, 시간강사료는 기준액의 1.5배 이내
4. 타 대학 전임교원의 시간강사료는 기준액의 1.5배 이내(개정 '95. 6. 7)

② 삭 제

③ 시간강사가 원거리에서 출강할 경우 실비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5.6.7.)

제8조(강사료 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시간
2. 등록기간
3.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개정 95. 6. 7)
4.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② 전항의 제1호의 경우에는 각 대학의 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시간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4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외국인 및 명예교수 초빙강사료) 외국인 및 명예교수로 초빙에 의하여 항상 근무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보수규정에 준한 해당금액을 강사료로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료 지급기일)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를 제외하고는 당월 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되, 당해 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원 책임시수 현황

책임시수(H)		보 직 명	감면시수		비고
일반 전임	산학 전임		일반 전임	산학 전임	
0~3 (0~45)	0~2 (30)	부총장	-7 ~ -10	-5 ~ -7	
4 (60)	3 (45)	처장, 비서실장, 산학협력단장, 일반대학원장, 단과대학장	-6	-4	
6 (90)	4 (60)	부처장, 부학장, 평생교육대학원장 국제교육원장, 정보통신원장	-4	-3	
7 (105)	5 (75)	특수대학원장, 산학협력부단장, 도서관장	-3	-2	
		[산학협력단] 부서장			
8 (120)	6 (90)	평생교육대학부원장, 보건진료소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사회봉사센터장 교육력강화센터장, RC센터장, 인성관장 학부(과)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2	-1	
		[산학협력단] 센터장			
9 (135)	6 (90)	주임교수, 교수사정관, 단과대학 부장 연구소장, 인성관 사감	-1	-1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장			
10 (150)	7 (105)	학과 책임교수			전임교원 기본시수
계약에 따름					외국인교원 비전임교원

- ※ 외국인교원 및 비전임교원이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반전임교원의 감면시수를 적용
- ※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하는 경우, 감면시수가 많은 보직을 기준으로 적용
- ※ 보직 임기가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교원의 감면시수는 학기 말까지 면제
- ※ 상기 표에 명시되지 않은 대내외 보직 및 위탁기관장은 (별표1)에 준하여 적용가능